

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3. 제안이유

가.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하여 육성계획(5년) 및 시행계획(1년)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,

나. 뿌리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주체 및 내용 등을 명확히 하는 한편, 뿌리산업육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)

나. 뿌리산업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근거 신설(안 제5조)

다.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을 변경하고, 비상설 형태로 전환(안 제6조)

라. 도지사가 추진하는 뿌리산업 육성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, 그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3조)

마.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)

가. 제출배경

- 현행 조례는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뿌리산업의 진흥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었음
-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으로 제조업의 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, 공정개선 지원 등 충북 제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함
- 이에 충청북도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 운영과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

나.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

- 안 제2조는 ‘정의’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 조례의 근거법인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도록 함
- 안 제5조는 ‘뿌리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’에 관한 사항으로, 현행 조례는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·추진하도록 하였으나, 개정안에는 5년마다 뿌리산업 육성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강화한 것은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·지원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6조는 ‘뿌리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’에 관한 사항으로,
 - 현행 조례는 뿌리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나, 개정안에는 뿌리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자문 기능을 추가하였음

- 또한, 현행 조례의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과학인재국장으로,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업무 담당 과장으로, 안 제11조에서 간사를 업무 담당과장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‘격하’ 하고, 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고 심의·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려 한 것은 관(官) 주도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짐
- 뿌리산업의 특성상 민간의 기술력과 경험 등 민간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민간(民間)주도가 아닌 관(官)주도의 위원회 운영은 획일화되고, 경직된 운영이 우려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, 관련 부서의 구체적이고 보편·타당한 설명이 요구됨
- 또한, 제4항제2호에서 위촉직 위원 중 충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‘삭제’ 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원의 참여를 제한한 이유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

○ 안 제13조와 안 제14조는 ‘뿌리산업 육성사업의 추진’ 과 ‘수행 기관 등에 대한 지원’ 에 관한 것으로,

- 뿌리산업 신상품 개발 등 3개 사항을 추가하였고,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에 관련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또한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등 뿌리산업 수행기관을 구체화한 것은 적절해 보임
- 다만, 현행 제14조는 ‘필요인력의 확보 등’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직업훈련,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등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개정안에는 이를 ‘삭제’ 하였는데, 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

다. 종합의견

- 이 조례안은 뿌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한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과 위원회 설치와 각종 육성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
-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조례안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다만, 위원회의 기능을 격하한 점,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의원을 배제한 점, 현행 조례의 필요인력 확보 조항을 삭제한 점 등 앞서 지적한 사항들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,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편·타당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